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07
----------	-----

2019. 7. 23.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04. 26. 복진경 의원 등 12명

나. 상정의결

- 제27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2019. 5. 13.)
“ 심사보류 ”
- 제27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2019. 7. 19.)
“ 원안가결 ”

2. 제안이유(제안설명: 대표발의자 복진경 의원)

-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민의 피해를 신속히 지원하고, 나아가 재난 피해로부터 구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나. 구민안전보험 가입 시 구민안전보험의 주요 내용을 구 홈페이지에 공고 하도록 함(안 제3조).
- 다. 피보험자 범위, 보험금 지급 절차 등 구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안 제10조까지)
- 라. 보험금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4. 관련근거 및 참고사항

- 가. 관련법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나. 예산조치 : 논의 필요
- 다. 입법예고 : 해당 없음

5.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이상원)

- 본 제정안은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강남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민안전 보험의 가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되었음
- 안 제2조(정의)에서 “구민안전보험”은 재난으로 인하여 강남구민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 하였으며, “재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함)¹⁾에서 정한 사항을 따르도록 하고, “보험기관”은 구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규정하였음
- 안 제3조(구민안전보험의 가입)는 구청장은 구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함)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가입한 경우 보상범위, 지급 절차 등 주요 내용을 구의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여 주민이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였음
- 안 제4조(피보험자)는 보험 대상자를 모든 구민과 「출입국 관리법」 제34조²⁾에 따라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으로 한 바, 기준 시점(전·출입,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제(이하 "국가기반체제"라 한다)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재난의 범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2. 그 밖에 제1호의 피해에 준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

2) 「출입국관리법」 제34조(외국인등록표 등의 작성 및 관리) ①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받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등

출생, 이민 등 관련 사항)의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대상(모든 국민, 외국인)이 적정한지의 대한 검토도 필요해 보임. 아울러, 관내 외국인 현황 설명도 필요함

- 안 제5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는 보험의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한도액을 규정한 바, 재난유형별의 구분(자연재해, 화재·폭발,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등) 설명 및 구분에 따른 보장내용의 상세 설명과 함께, 보장금액(한도액)의 설명도 필요함.
- 안 제6조(보험료 납입)는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하도록 규정한 바, 보험료는 ‘안 제4조(피보험자)의 피보험자 수’ 및 ‘안 제5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의 보장내용 등’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되는 바, 연계설명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예상(산출)되는 보험료에 대한 설명도 필요함
- 안 제7조(피해신고 및 조사)부터 안 제11조(보험금 지급 예외)까지는 피보험자의 피해 신고, 지급 청구, 보험금액 산정 및 지급(지급예외) 등에 관한 일련의 과정 및 절차 등을 규정한 바 상세 설명이 필요해 보임
- 안 제12조(자료의 수집·관리)는 구청장이 재난 발생시 피해 신고, 보험금 지급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관리 하도록 함으로써 재난 및 보험지급 등에 대해 체계적(안정적, 제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음.
- 또한, 본 제정안과 관련하여, 법³⁾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재난 구호

록외국인기록표를 작성·비치하고, 외국인등록표를 작성하여 그 외국인이 체류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하며, 특별시와 광역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36조 및 제37조에서 같다) 및 읍·면·동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 시·군·구 및 읍·면·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록표를 받았을 때에는 그 등록사항을 외국인등록대장에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③ 등록외국인기록표, 외국인등록표 및 외국인등록대장의 작성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제65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39조제1항(제46조제1항에 따라 시·도 지사가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1항의 대피명령을 방해하거나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연재난 2. 사회재난 중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② 제1항에 따른 재난복구사업의 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구호 및 재난의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국고의 부담금 또는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의연금 등으로 충당하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시·도 및 시·군·구가 부담하는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2.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3.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4.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의 자금 융자, 농업·임업·어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또는 중소기업 및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⁴⁾(2017.12.22. 제정)에 따른 지원과의 구분 설명도 필요해 보임

- 이에, 본 조례 제정은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국민의 피해를 지원하고, 재난피해로부터 국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법⁵⁾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 현황⁶⁾’ 등을 비추어 보면 그 의의는 있다고 사료됨

소상공인의 자금 융자 5.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7.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產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8.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9. 그 밖에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의 원인이 되는 사회재난에 대하여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제공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⑦ 제3항 각 호에 따라 지원되는 금품 또는 이를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사회재난”이라 한다)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원 결정)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운영되는 사회재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자력(資力)이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
2.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이하 “간접지원”이라 한다)
3.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이하 “피해수습지원”이라 한다)
4. 그 밖에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피해상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5조(중복지원 금지) 재난피해자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등”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② 생활안정지원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구청장이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방법) 구청장이 제6조제6항에 따라 재난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재난피해자 명의의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6) 조례현황(2019년 4월 11일 현재) : 구로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강동구

다만, 피보험 대상(전국민, 외국인) 설정 및 재난유형별 보험 범위 등의 논의와 이에 따른 각각의 소요예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제정의 필요성 및 실효성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임.

한편, 「지방재정법」 제17조⁷⁾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⁸⁾에 규정된 ‘보조의 제한’에는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조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와 연계 검토도 필요해 보임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제27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2019. 05. 13.)

○ 질 의: 본 조례안은 재난의 발생 이후에 보상을 해주기 위한 조례인지

○ 답 변: 네 맞습니다.

○ 질 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규정에 의해 발의를 하신거 같은데 규정을 보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응을 하는 것은 책무로 되어 있지만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된다는 조항은 없는데, 그리고 재난이 발생하여 재난선포지역으로 선포되면 국가에서 이미 배상이 시작되었다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상을 해줘야 하는지 그리고 자연재난인지 사회재난인지에 따라 배상의 범위가 달라지고 보험자의 보험대상에서 범위가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7)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기부·보조의 제한) ③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답 변: 구민안전보험은 다른 80여개 지자체에서도 추진하고 있고, 또한 국가에서 재난선포지역으로 선포하여도 보상부분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차원,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이 조례의 취지라고 생각함

□ 제27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2019. 05. 13.)

- 질의과정 중, 김진홍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에 대해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 및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심사보류 동의안이 제출되어 심사보류됨

□ 제27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2019. 07. 19.)

- 질 의: 본 조례안이 심사보류된 사유가 집행부와 이견이 있어서인데 협의가 잘 이루어졌는지

- 답 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법제처에 문의도 하였고, 타구의 조례 제정현황을 감안하고 우리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등을 위해 제정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구도 본 조례안을 제정 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됨

- 질 의: 구민안전보험 가입금액은

- 답 변: 1인당 400원 정도임

- 질 의: 1인당 400원 정도이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지

- 답 변: 보험료 및 홍보비 포함 2억 2천만원 정도로 예상함

- 질 의: 재난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 답 변: 재난에는 폭우, 태풍 등 자연재난과 화재, 폭발 등 사회재난이 있는데 모든 재난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보험이 청구되는 것임

- 질 의: 구민에게 홍보가 중요할 것 같은데 홍보 계획은
- 답 변: 강남소식지, 강남구 내 전광판,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홍보, 동
직능단체 회의, 22개동 플래카드 게시, 주민세 및 재산세 고지서
홍보문구 삽입 등을 통해 구민에게 적극 홍보할 예정임

7. 토론 요지 :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붙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복진경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7
----------	-----

발의연월일 : 2019. 4. 26.

발 의 자 : 복진경·김진홍·김광심·
이향숙·김세준·문백한·
이재민·이상애·안지연·
최남일·허순임·박다미·
(이상12인)

1. 제안이유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민의 피해를 신속히 지원하고, 나아가 재난 피해로부터 구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민안전보험의 가입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민안전보험 가입 시 구민안전보험의 주요 내용을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안 제3조).

다. 피보험자 범위, 보험금 지급 절차 등 구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안 제10조까지)

라. 보험금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나. 예산조치 : 논의 필요

다. 입법예고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강남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민안전보험의 가입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민안전보험”이란 재난으로 인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구민안전보험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제3조(구민안전보험의 가입)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민안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민안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기관의 명칭, 보상범위, 보상한도 및 지급 절차 등 구민안전보험의 주요 내용을 구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피보험자) 구민안전보험의 피보험자는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구민안전보험의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과 보험기관이 계약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계층에 해당하는 구민에 대해서는 보상내용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제6조(보험료 납입) 보험료는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제7조(피해 신고 및 조사) ①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한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금의 지급 청구) 구민안전보험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다.

제9조(보험금액의 산정) 보험기관은 제8조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 청구가 있으면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액을 산정한다.

제10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9조에 따른 보험금액의 산정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제11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재난 발생 이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진출한 경우
2.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제12조(자료의 수집·관리) ① 구청장은 구민안전보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재난 발생에 따른 피해 신고 및 보험금 지급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수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보험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이하 "국가기반체계"라 한다)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다. 삭제 <2013. 8. 6.>

2. ~ 11. (생략)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